

제1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산업건설위원회 2006. 12. 13(수)

조례안검토보고서

- ①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- ② 거창군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- ③ 거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김 종 목

<의안번호 제2006 - 73호>

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[검 토 보 고 서]

I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7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(산림환경과)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8일

II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, 또한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
- 보상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례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보상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.

III. 주요내용

- 피해보상 요건 완화 (안 제3조)
 - 현 행 ▮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m² 이상
 - ↳ 총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 - 개 정(완화) :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도 지원

IV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법령상 적절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2004년 10월에 의원 발의로 거창군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2005년 10월 12일 의원발의로 「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」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한 조례임.
- 동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일부 농업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, 지난 2006년 11월 15일 제133회 군의회 업무보고 시 피해보상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농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아주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, 금년이 시행 첫해로서 요건에 맞지 않아 보상하지 못한 피해농민이 있는지? 있으면 조례개정 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함.
-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12월 6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,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V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- 예산조치 : '06년 당초예산 반영
- 입법예고
 - 기 간 : '06. 11. 21 ~ 12. 4
 - 의견제출 : 별도의견 없음

<의안번호 제2006 - 76호>

거창군 간이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I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7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8일

II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와 조례명을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할 읍·면장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,
- 마을상수도 시설의 위탁 시 위탁관리업자 지정 및 자격 조건을 명문화하여 위탁관리 업무능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.

III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명칭을 “거창군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”로 변경
- 마을상수도시설 관리를 관할 읍·면장에게도 시설물의 설치, 운전, 개·보수 등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 (안 제4조제1항)
-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탁하게 할 때에는 위탁 관리업자를 지정토록 규정(안 제22조제2항)

IV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명칭 변경(법 제2조)과 함께, 수질검사가 강화(규칙 제4조 제1항)되고,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규정이 신설(법 제17조의3)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도 법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도시설에 대한 많은 변화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-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,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V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
 - 「수도법」(개정 2005.12.29, 법률 제7777호)
 - 「수도법 시행령」(개정 2006. 6.29, 대통령령 제19573호)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기 간 : '06. 11. 15 ~ 12. 6
 - 의견제출 : 별도 의견 없음

<의안번호 제2006 - 77호>

거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I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7일
- 제출자 : 거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-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8일

II. 제안이유

-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이 「수돗물 평가위원회」로 바뀌었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도 수돗물의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의 운영·관리까지 자문범위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설정하기 위한 것임.

III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명칭을 「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
-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「수돗물평가위원회」로 변경(안 제1조)
-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수질검사뿐만 아니라, 시설의 운영·관리까지 자문범위를 확대(안 제2조)

IV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”의 명칭에 “수질”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, 위원회의 기능과 자문범위도 확대함으로써 수질 이외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
- 수질향상은 물론, 수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.
-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,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V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
 - 「수도법」 제19조의2(개정 2005.12.29, 법률 제7777호)
 - 「수도법 시행령」 (개정 2006. 6.29, 대통령령 제19573호)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기 간 : '06. 11. 15 ~ 12. 6
 - 의견제출 : 별도의견 없음